

**2010년 방송콘텐츠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 제안요청서**

2010. 1.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I. 사업내용	1
II. 해외공동제작 지원대상 선정	3
1. 계약방법	3
2. 참가자격	3
3. 공동제작 사업제안서 제출	4
4. 공동제작 사업제안서 평가	5
III. 기타사항	6
1. 유의사항	6
2. 공동제작 착수 및 결과물 제출	7
3. 보고서 및 결과 평가	7
4. 공동제작지원비 정산	8
5. 특기사항	9

I. 사업내용

1. 사업명 : 방송콘텐츠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우리나라 방송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콘텐츠 다양화 도모 및 문화 다양성 증진
-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부속서 및 한-싱가포르, 한-캄보디아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해외 공동제작물에 대한 제작비 지원

3. 지원대상

- 방송법 제9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된 방송 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4. 공동제작 대상국

- 정부간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체결국(총 6개국)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싱가포르, 캄보디아

5. 지원내용

- 공동제작 대상국가와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비 지원
 - 제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비용을 지원하되, 자체인력 인건비, 자체 시설 이용료 등은 제외한다.

- 지원대상 프로그램의 장르 제한이 없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방송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방송심의에관한규정」 과 「협찬 고지에관한규칙」 등 방송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당초 사업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 공동제작 유형은 교환형과 공동작업형을 말한다.
 - “교환형(Swapping)”은 하나의 시리즈를 공동제작자가 한 편 또는 여러 편씩 나누어 제작한 후 교환하는 형태로 판권은 공동소유 하는 형태의 공동제작을 말한다.
 - “공동작업형(Co-operation)”은 공동제작자가 한 편의 영상제작 물의 각본, 촬영, 편집 등을 공동으로 하는 형태의 공동제작을 말한다.
- 국내 제작참여자가 단순 출자참여만 하는 형태는 지원 불가.

6. 제작비 지원 규모 및 방식

- 총 4편 제작 지원(전체 지원비 10억원)
 - 1편당 최대 2.5억원 이내. 다만, 1편당 자체조달금이 지원금액의 10%(250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1편당 최대 3억원 이내 지원예정
 - 1사업자당 연간 5억원 이내
 - 지원신청 및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 가능하다.
 - ※ 잔여예산 발생시 추가 지원 공고 예정
- 공동제작 지원금의 지급방식
 -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60%를 지급한다.
 - 중간보고서 검수 후 적합일 경우 3일 이내 30%를 지급한다.
 - 결과보고서 검수 후 적합일 경우 1일 이내 10%를 지급한다. 다만, 계약자의 제작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동제작물을 사전평가한 후 사전에 지급할 수 도 있다.

7. 제작기간 : 계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15일까지

8. 신청기간 : 2010.1.8(금) ~ 1.22(금)

9. 지원대상 선정 발표 : 개별통보

II. 해외공동제작 지원대상 선정

1. 계약 방법

- 공동제작 제작기관(또는 제작자) 선정 및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적용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출연 받은 기관(이하 출연 기관)에서 계약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계약체결 절차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회계예규 2200.04-158-3,2009.9.21)
 - 회계예규 제7조 : 기술능력평가(80점)과 가격평가(20점)
 - ※ 가격평가 대상 : 기술능력평가 68점 이상

2.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공동제작 사업제안서(이하 제안서)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방송법 제9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을 받거나 등록된 방송 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3. 공동제작 사업제안서 제출

- 제출부수 : 원본 1부 및 사본 10부(원본대조필 및 사본표시)
- 공동제작 사업제안서양식 : 별첨 양식 1
- 제출기한 : 공고서 참조
- 접수처 : 방송통신위원회 국제기구담당관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우111-777)
 - ※ 출연기관 접수처는 추후공지 예정임.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 마감일 소인유효. 다만, 1.25(월) 18:00까지 도착에 한함.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입찰공고(또는 사업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 제안서에는 공동제작 결과물에 대한 방송편성계획을 명기하고, 사업종료일내에 국내·외 방송을 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사업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방통위 또는 출연기관은 제안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제안서 및 계약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모든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를 해설한다. 다만, 공동제작물의 제목, 상대국, 공동제작자 정보 등은 영문 표기를 포함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업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제안서 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및 기준	항목 배점	배점 (80점)
수행능력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점	20점
	·세부 수행목표/범위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5점	
	·해외공동제작 실적/방송콘텐츠 해외진출 기여도	5점	
	·상대국 방송사의 역할, 참여도 등	5점	
제작목표 및 내용	·역사성, 시사성, 교육성 등 방송문화교류의 다양성	10점	40점
	·소재 및 구성의 독창성 및 적합성	10점	
	·공동제작 목표의 적절성	10점	
	·제작내용의 타당성 및 전문성	10점	
공동 제작물	·제3국 수출 가능성 등	10점	20점
	·방송문화교류 활용성	10점	

※ 동점일 경우는 제작목표 및 내용, 수행능력, 공동제작물 순으로 선정한다.

-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방통위 또는 출연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방통위 또는 출연기관은 공동제작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 시 필요에 따라 참가자에게 제안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설명회 요청 시 장소 및 일정 등은 서면으로 추후 별도 통보한다.
-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경우 평가를 진행하며, 종합 기술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세부평가기준 등 기술능력 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 하며, 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Ⅲ. 기타사항

1. 유의사항

- 참가자는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 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 참가자는 참가 및 선정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방통위 또는 출연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참가자는 본 사업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타 기관의 제안서로 제출하여 이중 지원되는 경우가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서상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당해 지원을 취소하고, 참가자는 당해연도를 제외한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 허위 영수증 제출·영수증 이중처리 등 정산 및 회계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계약자의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당하며,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 제작지원 결정 후 천재지변, 계약자 및 상대국 공동참여자의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작을 임의 중단 또는 포기, 불이행을 하거나, 공동제작물에 대한 불량판정을 받아 계약이 해지 될 경우 등에는 계약자는 이자를 포함한 지원금액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제75조(계약의 해약·해지),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숙지하여야 한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참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문의처 : 방통위 국제기구담당관 담당주무관
(☎02-750-1739)

2. 공동제작 착수신고서 및 결과물 제출

○ 착수신고서 제출

- 계약자는 착수신고서 1부(별첨 양식 2)를 제출하여 방통위 또는 출연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공동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 공동제작 착수신고서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 중간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별첨 양식 3)는 10부를 제본하여 2010년 6월 15일까지 공문서 및 중간 제작된 공동제작물(DVD 2매)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공동제작 결과물 제출 및 참조사항

- 최종 공동제작 결과보고서 1부(별첨 양식 4).
- 공동제작지원비(90%) 정산내역보고서 1부와 최종 10%지원 금액에 대한 사후정산보고를 하되, 협의에 따라 사전 수령 시 정산내역보고서에 포함한다.
- 최종 공동제작물 DVD 2매와 방송편성표 확인공문 및 방송결과에 대한 확인서 각 1부.
- 공동제작 결과물에는 방통위의 예산지원을 명시하는 자막 또는 음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위 모든 제출물은 공문서와 함께 사업종료일(2010년 12월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보고서 및 결과 평가

- 계약자는 중간 결과 발표 또는 진행사항을 중간점검하기 위하여 방통위 또는 출연기관과 공동제작 진행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방통위 또는 출연기관의 장은 공동제작 중간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 평가결과는 아주우수(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불량(60점미만)으로 구분한다.
- 평가 결과 “불량”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원인보고서를 방통위 또는 출연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통위 또는 출연기관의 장은 당해 공동제작지원을 중단시킬 수 있다.
- 공동제작 중간 및 결과 평가 항목
 - 공동제작목표의 달성도
 - 공동제작방법의 적절성
 - 공동제작결과의 문화적 수준
 - 공동제작결과의 활용성 등
- ※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동제작지원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방통위 또는 출연기관의 장이 정한다.

4. 공동제작지원비 사용 및 정산

- 계약자는 본 공동제작지원비의 정산에 대하여 공동제작 착수 전 승인 받은 착수신고서상의 산출내역에 따라 제작비를 집행한 후 집행 증빙서에 의하여 실비정산 한다.
- 지원비 집행 증빙서에 대한 방통위 또는 출연기관의 검토결과 본 지원사업과 무관하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 대하여는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한다.
- 지원비 사용실적 중 공동제작 지원사업 기간 이외의 사용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 지원비 사용내역(별첨 양식 5) 1부와 함께 지원비 사용 증빙서류 사본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지원금의 사용과 정산에 대하여 “방송콘텐츠 해외공동제작 지원금 사용지침(붙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특기사항

- 계약자는 본 사업을 통해 취득되는 지적재산권, 판권 등 무형적 성과물과 이에 해당하는 수익은 계약자의 소유로 하나, 방통위의 공익적 목적과 비영리적 사업, 정부간 협력 사업(해외한국어방송 지원 등)에 무상으로 사용 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방통위 또는 출연기관의 장에게 계약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험가입액 : 제작지원금 전액
- 피보험자 : 방통위 또는 출연기관의 장
- 보험기간 : 계약일로부터 종료일까지
- 보증내용 : 2010년 방송콘텐츠 해외공동제작 지원 반환지급보증
- 보험계약자 :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 계약자

- 공동제작 대상국가와의 공동제작은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필요시 대상 국가별 공동제작 협정체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방통위로 문의하여 참고할 수 있다.

[EFTA국가와의 공동제작시 준수 조건 주요내용]

① 기여비율 및 소유권

- 각 공동제작자의 기여비율은 각 공동제작에 대한 예산의 2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제작자는 각각의 투자에 비례하여 실질적인 기술 및 창의적 기여를 하여야 함
- 제작물 및 재제작물 복사본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 원본 제작물에 대한 접근은 공동제작자들에 의해 합의되어야 함

② 언어

- 각 공동제작물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관련 당사국의 국어로 제작되어야 함. 하나 또는 여러 당사국의 언어로 제작되는 것은 가능하며, 대본상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언어로 된 대사가 포함될 수 있음
- 각 공동제작물에 대한 당사국 국어로의 더빙 또는 자막 작업은 해당국에서 수행되어야 하되, 이와 다르게 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싱가포르와의 공동제작시 준수 조건 주요내용]

① 기여비율

- 각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및 창의적 기여비율은 각각 20% 이상이어야 함
- 제3국과의 공동제작 시 제3국의 재정적, 창의적 기여비율은 전체 재정적, 창의적 기여비율의 최소 20% 이상이어야 하되 우리나라 및 싱가포르의 기여비율보다 적어야 함
 - ※ 제3국은 우리나라의 공동제작협정 체결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캄보디아) 및 싱가포르의 공동제작협정 체결국으로 한정됨

② 제작 참여 인력

- 공동제작 참여 인력은 각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하되, 다른 국적 인력의 제한적 사용은 승인 사항임

③ 제작

- 공동제작 프로그램 초판 제작까지의 과정은 우리나라, 싱가포르, 제3국에서 진행 하되, 주된 재정적 기여를 한 당사국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함. 기술적으로 불가능 할 경우 각 당사국의 합의로 예외 적용 가능
- 공동제작 프로그램 내용의 90% 이상은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촬영, 제작 된 것이어야 함

④ 사운드 트랙

-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각 당사국의 국어 중 하나로 제작 되어야 함
- 내레이션, 더빙, 자막은 각 당사국 국어로 제작될 수 있으며, 상기 작업은 각 당사국에서 수행됨
-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위한 음악 작곡 인력은 각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함

⑤ 공동제작 명시

-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크레딧 타이틀에 '한국-싱가포르 공식 공동제작 프로그램' 또는 '싱가포르-한국 공식 공동제작 프로그램'임을 표기하거나 각 당사국의 제작 참여를 명시하여야 함

⑥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 공동제작 프로그램 관련 지적재산권의 소유 관계
- 공동제작 프로그램 제작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 권리 관계
- 공동제작 프로그램 판매 수입에 대한 공동제작사간 분배 기준
- 공동제작사의 공동제작 관련 기여 종료일

[캄보디아와의 공동제작시 준수 조건 주요내용]

① 기여비율

- 각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및 창의적 기여비율은 각각 10% 이상이어야 함
- 제3국과의 공동제작 시 제3국의 재정적, 창의적 기여비율은 전체 재정적, 창의적 기여비율의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되 우리나라 및 싱가포르의 기여비율보다 적어야 함
 - ※ 제3국은 우리나라의 공동제작협정 체결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싱가포르) 및 캄보디아의 공동제작협정 체결국으로 한정됨

② 제작 참여 인력

- 공동제작 참여 인력은 각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하되, 다른 국적 인력의 제한적 사용은 승인 사항임

③ 제작

- 공동제작 프로그램 초판 제작까지의 과정은 우리나라, 싱가포르, 제3국에서 진행 하되, 주된 재정적 기여를 한 당사국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함. 기술적으로 불가능 할 경우 각 당사국의 합의로 예외 적용 가능
- 공동제작 프로그램 내용의 90% 이상은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촬영, 제작 된 것이어야 함

④ 사운드 트랙

-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각 당사국의 국어 중 하나로 제작 되어야 함
- 내레이션, 더빙, 자막은 각 당사국 국어로 제작될 수 있으며, 상기 작업은 각 당사국에서 수행됨
-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위한 음악 작곡 인력은 각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함

⑤ 공동제작 명시

-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크레딧 타이틀에 '한국-캄보디아 공식 공동제작 프로그램' 또는 '캄보디아-한국 공식 공동제작 프로그램'임을 표기하거나 각 당사국의 제작 참여를 명시하여야 함

⑥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 공동제작 프로그램 관련 지적재산권의 소유 관계
- 공동제작 프로그램 제작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 권리 관계
- 공동제작 프로그램 판매 수입에 대한 공동제작사간 분배 기준
- 공동제작사의 공동제작 관련 기여 종료일

- ※ 붙임 : 방송콘텐츠 해외공동제작 지원금 사용지침 1부.
- ※ 별첨 : 작성양식
 - 양식 1. 사업제안서 1부.
 - 양식 2. 착수신고서 1부.
 - 양식 3. 중간보고서 1부.
 - 양식 4. 최종보고서 1부.
 - 양식 5. 지원비 사용내역 1부.

[붙임]

방송콘텐츠 해외공동제작 지원금 사용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방송콘텐츠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의 지원금에 대하여 계약자의 사용 및 정산에 대한 사용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원칙) ①계약자는 지원금의 수령 및 집행 등은 단일계좌를 신설하여 수행 및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원금은 지원대상 방송콘텐츠 해외공동제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제작비, 지출비목, 추진일정 등 당초 승인된 수행계획서에 따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행계획서 내 지출 비목간 금액이 20%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또는 방통위로부터 출연 받은 기관(이하 출연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사용금액을 인정한다.

④수행계획서 내 지출 세목간 금액 변경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보고를 통해 방통위 또는 출연기관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의 사유발생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사후 승인 받아야 한다.

⑤계약자는 총 제작비 중 자체조달금을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 시 총 제작비 집행 잔액과 총 제작비 불인정 금액은 전액 반납한다. 다만, 총제작비의 집행 잔액과 불인정금액의 합이 제작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제작지원금만 반납한다.

⑥인건비에 대하여는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또는 외환송금 등으로 하고, 직접비는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비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현금 사용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⑦여비(일비, 식비, 숙박비 등)의 경우, 지원대상 해당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소요경비를 계좌이체로 지급하되, 지급목적이 해당 지원사업의 실제 제작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이 구비될 경우에만 지원금 집행액으로 인정한다.

⑧관세, 부가세, 지체상금 등 사후 환급 및 공제 금액은 총제작비에서 제외된다.

제3조(영수증 처리 및 증빙자료의 제출) ①모든 지출은 영수증 및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제작비 집행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②제작 지원금의 일부를 해외 방송사가 집행하는 경우에도 본 사용 지침을 적용하며, 송금증 및 집행내역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천징수 신고납부 대상인 인건비성 수당의 경우,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금융계좌에 송금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제작비로 인정한다. (원천징수지급조서첨부)

④지원금 사용 증빙서류 원본은 비목별, 일자별로 편철하여 사업종료 후 5년 간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해외에서의 지원금 사용원칙) ① 해외촬영 시에도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용역비, 사례금 등은 국내에서 외환 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②5만원 이상 지출액을 현금 지급한 경우 해당 증빙자료(정확한 출처 별도 기재)와 출장신청서, 보고서 등을 통해 지급금액이 확인되어야 인정한다.

③가이드비, 통역비, 코디네이터비 등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연락처, 신분증 사본, 용역 일수 및 단가, 용역제공내역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외주용역의 경우 지원금 집행처리) 외주용역의 경우에도 동 집행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외주용역사의 인건비는 외부 인건비로 간주하여 집행 가능하다.

제6조(정산보고) ①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 작성 시 공고 안내 사항을 준수하여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영수증 정산은 방통위 또는 출연기관에서 위탁하는(또는 계약자 기관이 위탁하는) 회계법인의 정산을 마친 후 그 결과를 제출한다.

제7조(정산결과의 평가) 방통위 또는 출연기관의 장은 정산보고 결과를 평가하여 부당하게 집행되었거나 불인정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해당금액에 대하여 반환처리 할 수 있다.

[별표1]

【 제작지원금 사용가능 및 사용불가 항목 】

제작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제작지원금 사용불가 항목
<input type="checkbox"/> 인건비 ○ 외부 인건비 ○ 출연료(연기자 배역료, 음성배역, 직업출연료, 일반출연료, 음악출연료, 무용료, 계약직원 출연수당, 가족 및 단체출연) <input type="checkbox"/> 직접비 ○ 기획료(기획조사비) ○ 원고료(극본료, 구성료, 번역료, 일반원고, 기타원고) ○ 음악료(녹음실사용료, 작사료, 작곡료, 편곡료, 연주료, 채보료, 계약직원 음악료, 효과료) ○ 미술비(미술재료, 미술 용역료) ○ 저작권료 ○ 외부장비사용료(촬영장비, 조명장비, 음향장비, 특수효과, 특수장비, 동시녹음장비, 중계장비, 운반비, 차량 임차료 등) ○ 외부시설이용료(녹화녹음시설, 편집시설) ○ 여비(국내여비, 국외여비) ○ 제작진행비(기본진행비*, 야외진행비) ○ 기타(회계감사비, 송금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input type="checkbox"/> 인건비 ○ 자체인력의 인건비·수당 ○ 퇴직급여(내·외부 인력) ○ 전문직 용역을 일용직으로 분산 처리한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처리) <input type="checkbox"/> 직접비 ○ 자산 취득비(장비구입비, 장비수리비) ○ 자가시설 이용료 ○ 사무실 임차료 ○ 감가상각비 ○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 ○ 전화요금 등 경상경비 ○ 홍보비, 광고비 ○ 유흥업소, 찜질방 및 스포츠 센터 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용금액 ○ 자체보유 저작권료 ○ 기타 해당 콘텐츠 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체의 지출

* 기본진행비에는 해외방송사 지원비용이 포함됨

[별표2]

【 영수증 인정범위 및 추가 증빙자료 】

구분	영수증 종류	인정범위	추가 증빙자료
현금 사용 증빙	현금 영수증	·영수증에 법인등록번호 입력시에만 인정	사용내역서
	세금 계산서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회사소개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수령 확인증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자필서명 시에만 인정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회사소개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간이 영수증	·5만원 미만의 지출에 한함 ·총액 1백만원까지만 인정 (단일 건에 대해 5만원 미만의 간이영수증 여러 개로 분할 처리하는 경우 불인정)	사용내역서
카드 (신용체크) 사용 증빙	사용 영수증	·사용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을 때만 인정 ·카드대금 지급계좌를 지원금계좌로 설정한 경우에만 인정(별도카드 불인정)	사용내역서, 지급영수증 (카드사 발급)

※ 제작진행비 중 회의비 사용시 회의록 첨부(회의 목적 및 참석자 명단 포함)

[별첨 양식1]

2010년 방송콘텐츠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 사업제안서

■ 프로그램명 :

o 상대국/방송사/제작사 :

사업제안법인명 :

담 당 자	소속 및 직함	
	성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붙임 1>

사업수행계획서

(총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1. 공동제작 프로그램 개요

가. 제목

나. 기획의도

(진흥원의 방송콘텐츠 해외공동제작지원 지정공모과제 사업목적과의 부합여부)

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 (10줄 이내로 작성, 세부내용은 별첨)

라. 프로그램 구성 (10줄 이내로 작성, 세부내용은 별첨)

마. 소재 및 주제의 특징

바. 제작규격(분량, 영상, 음향)

2. 해외공동제작 지원 필요성

※ 공동제작계획의 적합성 및 독창성, 공동제작으로 인한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서술

3. 공동제작 프로젝트 내용

가. 해외공동제작 사업자

※ 사업자명, 소재지, 회사 소개, 해외공동제작실적 등 포함

나. 해외공동제작 사업자 선정사유

다. 공동제작 프로젝트 개요

라. 상대국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의 공동제작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의 주요 내용

4. 공동제작협정 준수 계획

※ 공동제작협정 주요 준수 조건(공고-I.사업개요)을 참조하여 해당 항목별로 준수 계획을 기술

가. EFTA 4개국과의 공동제작의 경우

- ① 기여비율 및 소유권
- ② 언어

나. 싱가포르와의 공동제작의 경우

- ① 기여비율
- ② 제작 참여 인력
- ③ 제작
- ④ 촬영 장소
- ⑤ 사운드 트랙
- ⑥ 공동제작 명시

다. 캄보디아와의 공동제작의 경우

- ① 기여비율
- ② 제작 참여 인력
- ③ 제작
- ④ 촬영 장소
- ⑤ 사운드 트랙
- ⑥ 공동제작 명시

5. 제작일정

※ 지원대상 선정후 지원대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업추진일정이므로 신중하게 작성

제작과정	기간	세부내용

6. 제작지원금 신청 내역

구 분		세부산출내역	금액(천원) (부가세 제외)
비목	세목		
총계			
■ 인건비	(합계) 1. 외부인건비 2. 출연료		
■ 직접비	(합계) 3. 기획료 4. 원고료 5. 음악료 6. 미술비 7. 저작권료 8. 외부장비이용료 9. 외부시설이용료 10. 여비 11. 제작진행비 12. 기타		

※ '제작지원금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며, 미준수 시 심사 감점처리 및 향후 적발 시 반환처리 예정

※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추진 예산에 반영되므로 신중하게 작성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제작비 내역을 기재

※ 세부산출내역에는 단가, 인원수, 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

※ 해당되지 않은 부분은 삭제

7. 자체보유자원 활용계획

※ 지원대상 선정 후 계획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작성

가. 인력 활용계획

자체인력			외부인력		
역무	인원수	비고	역무	인원수	비고

나. 장비 및 시설 활용계획

자체장비 및 시설		임차장비 및 시설		
장비·시설	수량	장비·시설	수량	소요비용

8. 기획자 및 연출자 경력사항

	기획자	연출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생년월일		
주요 제작경력		
수상경력		
기타		

9. 지원대상 프로그램 편성계획

구분	방송국명	방송채널	편성일시
우리나라			년 월 일 : ~ :
상대국			년 월 일 : ~ :

10. 기타 동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참고자료

<붙임 3>

사업자 현황 자료

법인명		대표자 성명	
허가(승인, 등록) 일자		운용개시 일	
채널명		공급분야	

1. 인력 현황(신청일 기준)

(단위 : 명)

구 분	2010년	비고
임·직원 수		
제작인력 수		

2. 자산 규모(2009년 결산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비고
총자산		
자기자본		
고정부채		
유동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최근 1회계연도의 사업자 결산서 등을 적용하여 작성

3. 제작 현황

가. 편성현황(2009년)

구 분	연간 편성시간	편성비율
자체제작		
외주제작		
합 계		

나. 제작현황(2009년)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율
자체제작비		
외주제작비		
합 계		

4. 해외공동제작 및 방송 실적(2007 ~ 2009년)

연도	프로그램명	공동제작 상대국 및 방송사(제작사)	제작규격	국내·외 방송 및 판매실적	총 제작비
			회x 분물		천원

※ 최근 3년간 해외공동제작 및 유사 과제 수행 경험에 대한 사항 기재 및 증빙첨부

5. 제작지원 관련 타 정책자금 수혜현황(2007년~)

정책자금명	주관기관	사업 명 (지원프로그램 명)	사업기간	지원금액	비고

※ 방송발전기금, 국고, 문화산업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현재 신청 중인 사항을 전부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완료', '수행 중', '수행 예정', '신청 중' 등을 명확히 기재

[별첨 양식2]

착 수 신 고 서

프로그램 명		
제작기간	계약일 ~ 2010. .	
제작사 (계약자)	제작사명	
	주소	
	계약담당자	○ ○ ○ (부 서) (전화) (e-mail) (휴대전화)
제작책임자	소 속 : 주 소 : 연락처(전화, e-mail) : ,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공동제작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착수신조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제작책임자 : (인)		
제 작 사 : (직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 ○ ○ 프로그램 공동제작

1. 공동제작 목표

가.

○

○

나.

○

○

2. 공동제작 내용

가.

○

○

나.

○

○

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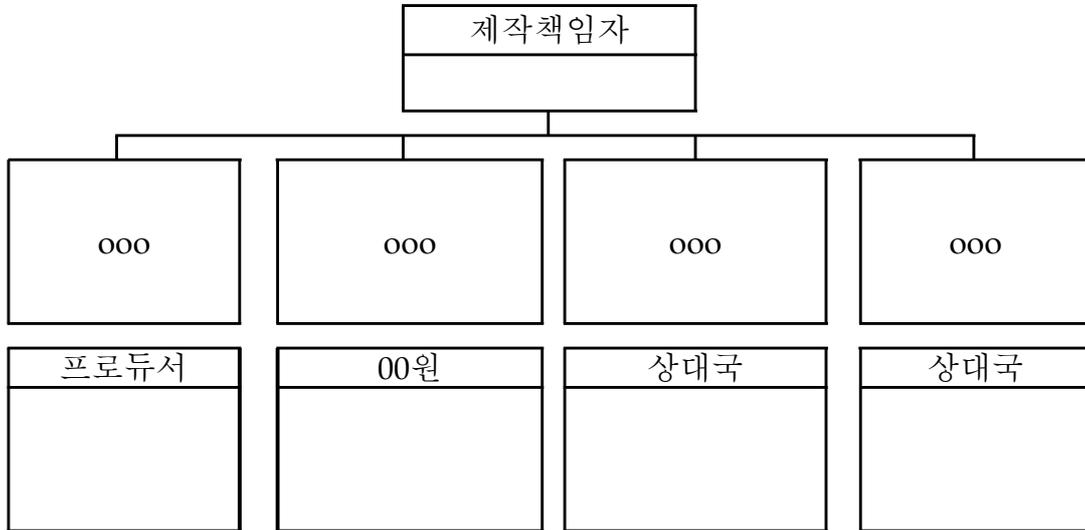
○

3. 추진계획

세부내용	제작자	월별 추진계획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분기별 수행진도(%)															

4. 공동제작팀 편성

가. 공동제작팀 편성표



나. 팀원별 참여율

소 속	직 책	성명	주요경력	참여율(%)	제작참여내용	비고
	책임자					
	프로듀서					
상대국	책임자					
	프로듀서					

주) 본 공동제작 참여율과 산출내역서의 참여율이 일치하여야 함.

다. 국내 공동제작팀 인적사항

1) 제작 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한 자)	()				
현 주 소	(전화)				
학 력	교육기관명	부 터	까 지	전공분야	
보 직 및 주요경력	기 관 명	부 터	까 지	내 용	
관련분야 제작실적(최근 3년간)					
프로그램명		제작기간	제작지원기관	상대국/방송사	

2) 프로듀서

소 속		직 위		
성 명 (한 자)	()			
현 주 소	(전화)			
학 력	교육기관명	부 터	까 지	전공분야
보 직 및 주요경력	기 관 명	부 터	까 지	내 용
관련분야 제작실적(최근 3년간)				
프로그램명	제작기간	제작지원기관	상대국/방송사	

※ 프로듀서급 이상은 모두 작성

5. 주요 기자재 및 시설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보유현황	확보방안	비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공동제작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를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 내역을 기록하고 “확보방안”란에는 지원금을 제외한 유상으로 임대를 하거나 신규구매로 구분하여 기록.

6. 공동제작 총 제작비 산출내역서

비목구분	금 액(천원)	구성비(%)	비 고
1. 공동제작 가. 인건비 나. 직접비 다. 라.			
2. 경 비 가. 국내여비 나. 국외여비 다. 라. 마. 바.			
3. 일반관리비			
계			

※ 비고에는 지원금, 자체조달금, 상대국 부담 등으로 구분

[별첨 양식3]

2010년 방송콘텐츠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 중간보고서

■ 지원대상 프로그램 명

0

사업수행법인명 :

담 당 자	소속 및 직함	
	성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I. 사업개요

사업수행 법인명						
프로그램명						
공동제작 상대국 및 방송사(제작사)						
제작기간	2010. . . ~ . . .					
총 제작비 (부가세 제외)	구 분	우리측 자금			상대측 자금	총 제작비 (①+②)
		제작지원 금 (a)	자체조달자금 (b)	소계(①) ①=a+b	제작비(②)	
	금액(원)					
	비율(%)					100.0
프로그램 개요						
우리측 제작비 집행액 (부가세 제외) * . . . 기준	구분	제작지원금	자체조달금	계		
	집행액(원)					
	집행률(%)					
추진실적	○ ○ ○ ○					
추진계획	○ ○ ○ ○					
편성계획	○ (※채널 및 편성 일시)					

II.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제 작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년 ○월		○년 ○월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제작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사유 기재

III. 기타특이사항 및 보고사항

관리번호
2010- -

**2010년 방송콘텐츠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 사업 개요 > —

◎ 사업기간 :

◎ 사업비 : 원(집행결과 기준)

 o 지원금 : 원

 o 기타 : 원

◎ 프로그램명 :

제출일자 : 2010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명 :

직 인

담 당 자	소속 및 직함	
	성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I. 사업개요

사업수행 법인명							
프로그램명							
공동제작 상대국 및 방송사(제작사)							
사업기간	2010. . . ~						
총 제작비 집행내역 (부가세 제외)	구 분		우리측 자금			상대측 자금	총 제작비 (①+②)
			제작지원 금 (a)	자체조달자금 (b)	소계(①) ①=a+b	제작비(②)	
	계 획	금액(원)					
		비율(%)					100.0
	집 행 액	금액(원)					
		비율(%)					100.0
■ 지원금 집행잔액 : ■ 지원금 발생일자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개요를 요약하여 기재하고, 세부내용은 첨부)						
사업 추진방법	(※ 콘텐츠 제작방법, 일정 등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프로그램 송출실적	우리측	○ 방송사 및 방송채널 : ○ 송출 (예정)일시 :					
	상대측	○ 방송사 및 방송채널 : ○ 송출 (예정)일시 :					
제작결과물 제출내역	○ 제작결과물 : 제작물 사본을 DVD(HD프로그램) 또는 CD로 2부 제출(※ 편성확인공문 별도 첨부)						

II. 해외공동제작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2. 프로그램 구성

3. 제작규격(분량, 영상, 음향)

4. 공동제작 상대국 및 방송사(제작사)

5. 공동제작협정 준수 내용

※ 공동제작협정 주요 준수 조건(공고-I.사업개요)을 참조하여 해당 항목별로 준수 내용을 기술

가. EFTA 4개국과의 공동제작의 경우

- ① 기여비율 및 소유권
- ② 언어

나. 싱가포르와의 공동제작의 경우

- ① 기여비율
- ② 제작 참여 인력
- ③ 제작
- ④ 촬영 장소
- ⑤ 사운드 트랙
- ⑥ 공동제작 명시

다. 캄보디아와의 공동제작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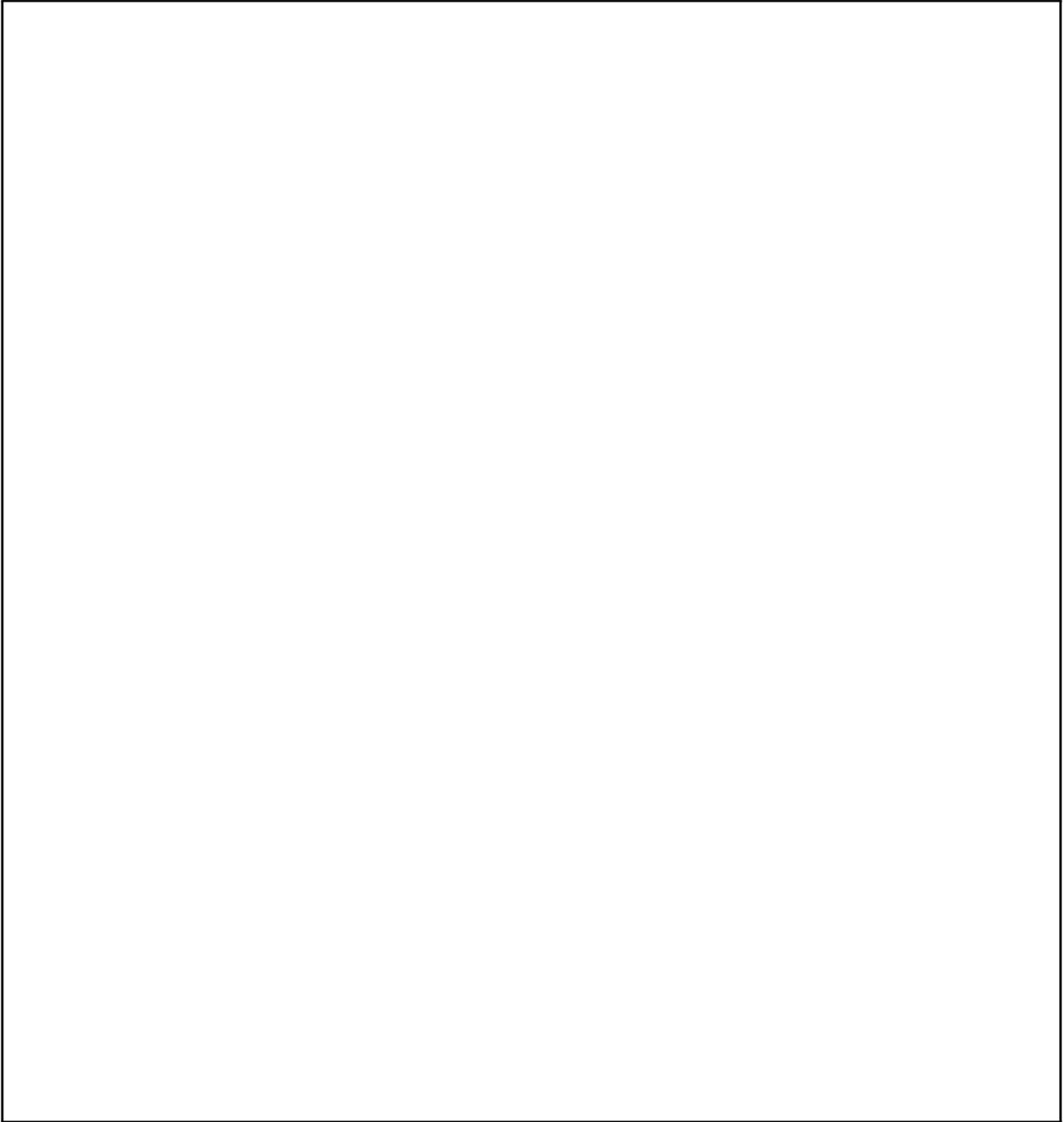
- ① 기여비율
- ② 제작 참여 인력
- ③ 제작
- ④ 촬영 장소
- ⑤ 사운드 트랙
- ⑥ 공동제작 명시

Ⅲ.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제 작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년 ○월		○년 ○월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제작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사유 기재

IV. 사업추진성과



※ 작성요령

- 방송콘텐츠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V. 자체평가

o 사업수행 결과 잘한(된) 점

o 사업수행 결과 잘못된(된) 점

o 사업수행 중 애로사항 및 문제점

o 사업수행이 참여방송사에 도움이 된 점

o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자 만족도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불만족)

① 사업목적, 지원조건, 지원대상, 예산의 규모 등 정책에 대한 만족도()

② 사업에 대한 홍보,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신속·간편 등 절차에 대한 만족도()

③ 제작사의 경쟁력 및 기여도 등 지원효과 및 성과에 대한 만족도()

VI. 방송콘텐츠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0

0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VII.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DVD 또는 CD	-----		
2	보 고 서	-----		
3	책 자	-----		
4	뉴스레터			
5	편성표			
.	.			
.	.			
.	.			

< 자료유형 >

- o DVD 또는 CD
- o 보 고 서
- o 발간책자
- o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o 편성표 또는 편성확인서, 언론보도 자료 등

[붙임 1-1]

I. 제작지원금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교 부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o 지원금이자 발생액 : 원

- XX은행 XX 지점, 예금주 방통위 또는 출연기관, 계좌번호 : XXXX-XX-XXXX(추후 통보)

제작지원금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결과보고 시 계좌를 해지한 후, 방통위 또는 출연기관 계좌로 입금(송금내역 및 해지통장 사본 제출)

II. 제작지원금 집행총괄표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구 분		계 획 (a)	집 행 (b)	집 행 잔 액 (a-e)
비 목	세 목			
총 계				
■ 인건비	(합계)			
	1. 외부인건비			
	2. 출연료			
■ 직접비	(합계)			
	3. 기획료			
	4. 원고료			
	5. 음악료			
	6. 미술비			
	7. 저작권료			
	8. 외부장비이용료			
	9. 외부시설이용료			
	10. 여비			
	11. 제작진행비			
	12. 기타			

※ 계획(a)은 최초 사업계획 기준으로 작성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제작비 내역을 기재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 고
계			

○ 기타 수익금 집행내역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계좌인출 일	인출액	지출 내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자
		비목(세목) 및 내역	지출액		
합계					

IV. 제작지원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제외)

구 분		계획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비목	세목				
■ 인건비	00				
	00				
	00				
■ 직접비	00				
	00				
	00				
■ 이자발생액		-	-		※ 지원금계좌 이자수익 전액반납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V. 제작지원금 변경내역(*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천원, 부가세 제외)

구분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승인여부
-	비목				
■ 인건비	00				
	00				
	00				
	00				
	00				
■ 직접비	00				
	00				
	00				
	00				
	00				

※ 승인여부 : 방통위 또는 출연기관,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방송콘텐츠 해외공동제작 지원 지정공모과제
제작지원금 집행실적에 대한 감사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출연기관 귀하

2010년 X월 X일

본 감사인은 oo회사의 2010년 X월 X일부터 2010년 X월 X일까지의 XX콘텐츠에 대한 제작지원금 집행 내역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집행 내역서를 작성할 책임은 oo회사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이 집행내역서가 oo회사가 제출한 사용계획서 및 지출증빙 및 기타 관련서류를 통해 방통위 또는 출연기관의 집행지침에 따라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 oo(프로그램명) 정산보고서 및 부속서류 일체는 oo회사의 XX원이(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방통위 또는 출연기관의 제작지원금 집행지침에 의거 적절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제작지원금 집행지침을 위반한 금액은 총 XX원입니다.)

XX 회계법인
담당공인회계사 XXX (인)
(전화번호:)

붙임 : 1. oo(프로그램 명) 정산결과 불인정 금액 현황 1부
2. 부속서류 일체
- 지원금·자체조달자금 거래내역 확인서, 영수증 사본, 계약서 등

※ 본 감사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에 한함.

◆ 000(프로그램명) 정산결과 불인정 금액 현황

1. 제작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계좌인출 일	인출액	지출내역		영수증 번호	불인정 사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합계					

2. 기타 수익금 집행내역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계좌인출 일	인출액	지출내역		영수증 번호	불인정 사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합계					

[별첨 양식5]

지원비 사용내역

구 분	금 액(원)	구성비(%)	비 고
1. 공동제작 가. 인건비 나. 직접비 다. 라.			
2. 경 비 가. 국내여비 나. 국외여비 다. 라. 마. 바.			
3. 일반관리비			
4. 불용액 등			
계			

※ 결과보고서의 제작 지원금 집행내역을 사용 용도별 내역을 기록